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5633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구합2415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19.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10,113,6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25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